

2015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1. 취 지

안산지역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2015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미래의 대한민국 건축을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산에서 꿈꾸고 만들고 싶은 이것저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유도한다.

2. 개 요

1) 기 간 : 2015.8.20(목) ~ 22(토), 2박3일

2) 참가인원 및 대상

가. 참가인원 : 48명 및 각 학교 교수

나. 참가대상 :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생

3. 장 소 : 엑스퍼트 연수원(대부도)

4. 주 제 : 안산에서 꿈꾸고 만들고 싶은 이것저것 (별첨참조)

부제-1 안산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아이디어

1) 화성경계(매송IC)

2) 서안산IC/TG

- 내용 : 도시 이미지 차별화에 대한 진출입로 이미지 개선에 필요성에 따라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부제-2 노유자시설 (경로당) 패시브하우스

가)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와동 96-1

나) 규 모 : 대지면적 299.6㎡ (건폐율:60%, 용적율250%)

2층이내 (패시브하우스)

5. 참가자 수행활동

가) 8월 22일(토) :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조별 수행보고서 발표

나) 8월 28일(금)17:00까지 : 최종작품 제출(제출장소: 안산시 건축사회)

다) 9월 3일(목) : 작품심사

라) 제출내용 : 판넬(900*1200)1장, 모형(600*600, 규격 변경 가능함)

6. 참가자 혜택

- 대상 또는 경관개선 아이디어중 선정된 우수한 작품은 설치함
-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안산시장상,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의장상 및 안산시건축사회 회장상 수여

7. 세부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대 관
8/20(목)	09:30	준비상황점검, 인원점검	중앙역신도시 버스정류장
	10:00	엑스퍼트 연수원으로 출발	버스로
	11:00~12:00	숙소배정, 자리정리, 발표준비	세미나실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특 강	세미나실
	14:30~18:00	오리엔테이션 및 발표(사전조사, 등)	세미나실
	18:00~19:00	저녁식사	
	19:00~22:00	팀별작업	교육동
8/21(금)	07:00	기상 - 아침운동	
	07:30~08:30	아침식사	
	08:30~11:00	팀별작업	교육동
	11:00~12:00	레크레이션	족구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8:00	팀별작업	교육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	팀별작업 (개별 크리틱)	교육동
8/22(토)	07:00	기상 - 아침운동	
	07:30~08:30	아침식사	
	08:30~11:30	팀별작업	교육동
	11:30~12:00	팀별 발표준비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발표(최종)	세미나실
	16:00~16:30	마무리(초청인사 격려사)	
	17:00~	안산으로 출발	
	18:00	중앙역 해산	

1. 조남분기점

- 대상지별 관문 연출 및 디자인

- 시흥시와 인접하며 수인산업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유동차량이 많은 구간이며, 시흥시의 경우 경관사업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준비가 안된 시설물 및 보도 경관미정비 구간 개선필요 (수인산업도로 안산초등학교 부근 550m)



- 경운기 전용도로 및 보행자 공간개선
-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재정비
- 가로등 정비- 안산친화색으로 도장
- 고가하부 / 정거장 설치구간 보도 및 주변환경개선
- 시흥시와의 경계녹지대 개선



가로등 개선필요



경운기 전용차도 미설치 및 훼손



고가하부 및 보도환경 미정비



녹지대 및 중앙분리대 미흡

2. 화성경계

- 대상지별 관문 연출 및 디자인
- 화성시와 인접한 구간으로 매송IC 부근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경관형성이 필요함



- 화성에서 안산시 진입이 되는 본오지하차도 개선
- 보도구간 및 자전거 도로 개선
- 가로등 등 시설물 개선
- 화성시와의 시경계표지판 및 주변환경 개선



보도구간, 자전거 도로 개선



가로등 원색 적용부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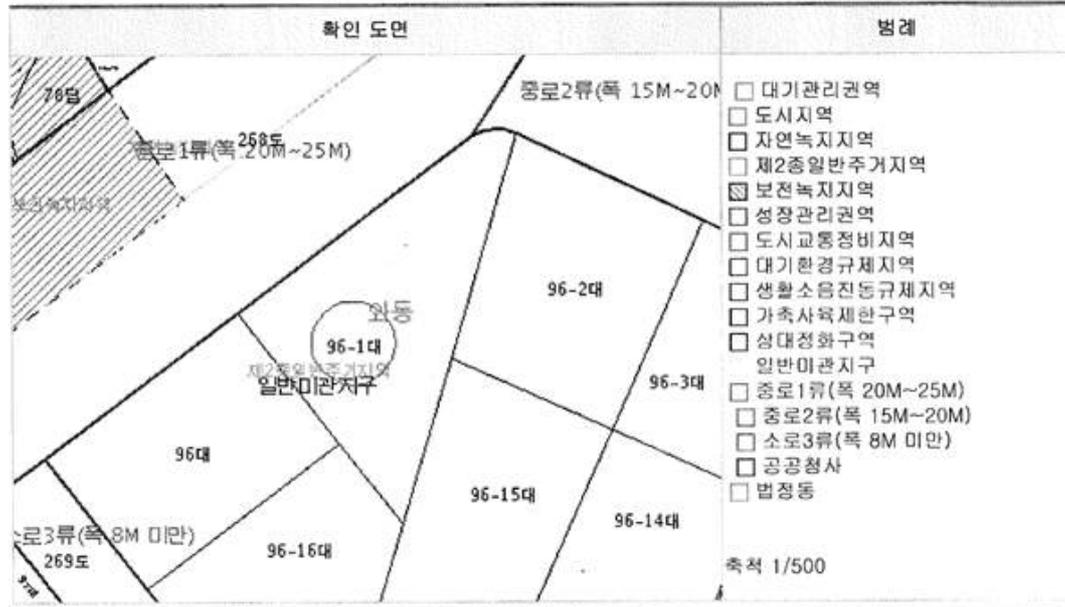


경계표지판 및 주변환경개선



지하차도 개선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와동 일반 96-1		
지목	대	면적	299.6 m ²
개발공시지가 (m ² 당)	844,800원 (2015/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종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점향), 종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점향)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소음진동규제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2013-10-21)(한국디지털미디어고)<학교보건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유의 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지자체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